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8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한정애·김준형·서영교

이수진 • 이학영 • 송옥주

김재원 · 김영배 · 정성호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이는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증의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호).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4호 중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를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 태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모바일외국인 등록증을 부정하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 |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 |
| 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 | 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 |
| 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 | ス])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 |
| 여서는 아니 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다른 <u>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u> | 4사람의 외국인등록증 |
| 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 |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 |
| <u>정하게</u>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 | 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포함 |
| 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 |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 | 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
| 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 | <u> 부정하게</u> |
| 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 | |
| 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 |
| | |
| | |
| |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